[서식 예] 물품대금청구의 소(생선 도매대금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물품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 및 이중 금 6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○. ○.부터, 금 4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○. ○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에서 ○○상회라는 상호로 생선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, 피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에서 ○○상회라는 상호로 생선소매업에 종

사하고 있습니다.

- 2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경부터 피고에게 생선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매달 말톨때 결제를 하여 왔는데, 같은 해 ○. ○○.경부터 같은 해 ○○. ○○.까지의 1개월 분 외상대금 6,000,000원, 같은 해 ○. ○○.경부터 같은 해 ○○. ○○.까지의 1개월분 외상대금 5,000,000원, 같은 해 ○. ○○.경부터 같은 해 ○○. ○○.까지의 1 1개월분 외상대금 4,000,000원, 합계 금 15,000,000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선의 외상대금 15,000,000원 및 이중 금 6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. 〇. 〇.부터, 금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. 〇〇. 〇.부터, 금 4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〇〇. 〇〇. 〇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거래명세표1. 갑 제2호증세금계산서1. 갑 제3호증인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MA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손해를 증명할 필요	없이 특별히 민법 제397조),	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